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02

발의연월일: 2024. 9. 13.

발 의 자:김승수·강선영·박성민

권성동 · 조승환 · 서지영

박준태 • 조배숙 • 이인선

구자근 · 정동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아동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서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정아동 등이 후원 등을 통하여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1:1 매칭펀드로 동일 금액을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자립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을 실시 중임.

2007년 시작된 동 사업의 대상아동과 매칭금액 및 계좌적립금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전반적인 사업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 제목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자산형성지원사업 및 자산형성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자산형성지원사업(이하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을 "자산형성지원사업을"로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제43조제3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자산형성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산형성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아동 관련 정보
- 2. 자산형성지원사업 후원자 관련 정보
- 3. 그 밖에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산형성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형성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득하여 관리·이용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자료·정 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43조제1항 중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을 "자산형성지원사업을"로 하다.

제71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산형성정보시스템의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① 국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및 자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산형성정보시스템) 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	
할 수 있도록 <u>자산형성지원사</u>	
<u>업</u> 을 실시할 수 있다.	<u>자산형성지원사업(이하</u>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 한다)-
<u><신 설></u>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제43조제3항에 따른 금융자산
	관리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
	스템(이하 "자산형성정보시스
	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
	<u>여야 한다.</u>
<u><신 설></u>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산형성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
	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 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 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아동 관련 정보
- 2. 자산형성지원사업 후원자 관 련 정보
- 3. 그 밖에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 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산형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 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형성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득하여 관리 ·이용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한다.

② · ③ (생 략)

제71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신 설>

2. (생략)

③ (생 략)

·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① <u>자</u>
산형성지원사업을
②·③ (현행과 같음)
제7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2
<u>.</u>
1. (현행과 같음)
1의2.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산형성정보시스템의 자료・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한 사람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